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경로당 비상벨 설치 의무화〉

■ 김기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53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기웅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02. 04.
3. 회 부 일 : 2026. 02. 0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로당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경로당 내에서 범죄·안전사고 또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대응장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이용·운영하는 공간으로 상시 관리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특성상 낙상·급성 질환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될 우려가 큼.

이에 경로당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비상 상황 발생 시 시설 관리자 또는 관할 경찰관서와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 의무를 부과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경로당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관리자나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37조의4(경로당 비상벨 설치 의무)</u> <u>① 경로당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u>

-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임(법 제36조제1항제2호)¹⁾. 2024년 기준 경로당은 총 69,260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1)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최근 3년간 경로당 개소수 현황 >

(단위 : 개소)

구분	2022	2023	2024
경로당	68,180	68,792	69,260

자료: 「2025 노인복지시설 현황」 연도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 노인 관련 범죄 및 안전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4.4%의 노인은 사기성 물품구매 경험이 있고, 0.5%의 노인은 화재·가스·누수 등 안전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범죄 및 사고 경험률 >

(단위 : %)

범죄피해				사고			재해
재산범죄	폭력 및 강력범죄	사기성 물품구매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금전 피해	보행자 교통사고	운전자 교통사고	안전사고 (화재, 가스, 누수 등)	자연재해
0.5	0.3	4.4	2.1	1.5	1.5	0.5	1.1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안은 경로당에 경찰관서 또는 관리자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이를 통해 고령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이용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나 급성 질환 발생 시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통해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한 입법례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우리나라의 노인 휴대전화 보급률이 9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경로당 내 비상벨 설치가 범죄나 안전사고 예방에 얼마만큼의 효과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나아가 개정안은 비상벨을 ‘경찰관서에 연결되는 기계장치’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로당은 상대적으로 범죄보다는 안전사고가 더 문제될 수 있으므로, 연결 대상을 소방관서로 규정하거나 소방관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유관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나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휴대전화의 보급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경로당 비상벨 설치 의무화는 실익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입장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는 기존 긴급신고 체계와 중복되어 행정력 낭비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임.

보건 복지부	이용시설인 경로당의 특성(생활시설과 달리 한정된 시간만 자율적 이용), 비상벨 설치 및 유지 비용*의 부담 문제, 휴대전화의 보급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경로당 비상벨 설치 의무화는 실익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설치비 약 381억원, 유지비 약 46억원
부산 사하구	기존 긴급신고 체계(112, 119)와 중복되어 행정력 낭비 우려, 별도 비상벨 설치하는 대응단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골든타임 확보 저해, 비상벨 설치 및 유지보수비는 국비 매칭으로 추진하더라도 기초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감당 곤란
경기 의정부시	개인 통신 기기(휴대전화 등) 활용을 통한 신고 보편화로 비상벨 설치 실효성 낮음, 비상벨은 벽면 특정 높이에 고정 설치되므로 낙상, 급성 질환으로 바닥에 쓰러진 상황에서는 비상벨 접근·조작이 사실상 불가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은 경로당 특성 고려 시 장비 관리 및 점검 미비 우려

문 의 처
02)6788-5500